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71

발의연월일: 2021. 12. 30.

발 의 자:서일준・이종성・김용판

이 용 · 이철규 · 김기현

김승수 · 김태흠 · 김석기

하영제 · 양금희 · 허은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%에서 45%로 3%p 상향조정되었음.

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, 재산세 등 부동산 세 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.

특히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경제 악화는 서민들의 실질소 득의 감소를 가져왔음.

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,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.5%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55조제1항).

## 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종합소득 과세표준	세 율		
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4.5퍼센트		
1,200만원 초과	54만원 + (1,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퍼센트)		
4,600만원 이하			
4,600만원 초과	530만원 + (4,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퍼센트)		
8,800만원 이하			
8,800만원 초과	1,538만원 + (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)		
1억5천만원 이하			
1억5천만원 초과	3,708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8퍼센트)		
3억원 이하	5,700년번 * (1월50년년천글 조파야근 50퍼센트)		
3억원 초과	9,408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)		
5억원 이하	5,400 년 년 - (3 구 년 글 소 의 이 는 급 극의 40의 센트)		
5억원 초과	1억7,408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)		
10억원 이하	1 - 1,400인번 + () - 1번글 소파이는 급백의 42퍼센트)		
10억원 초과	3억8,408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)		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제55조(세율) ① 거주자의 종합소		제55조(세율) ①	
득에 대한	소득세는 해당 연도		
의 종합소	득과세표준에 다음의		
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			
(이하 "종	·합소득산출세액"이라		
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			
<u>종합소득</u> <u>과세표준</u>	세율	<u>종합소득</u> <u>과세표준</u>	세율
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퍼센트	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4.5퍼센트
1,200만원 초과	72만원 + (1,200만원을	1,200만원 초과	54만원 + (1,200만원을
4,6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)	4,6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14퍼센트)
<u>4,600만원 초과</u>	582만원 + (4,600만원을	4,600만원 초과	530만원 + (4,600만원을
8,8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)	8,8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)
8,800만원 초과	1,590만원 + (8,800만원을_	8,800만원 초과	1,538만원 + (8,800만원을
<u>1억5천만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)	1억5천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)
<u>1억5천만원 초과</u>	3,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	<u>1억5천만원 초과</u>	3,708만원 + (1억5천만원을
<u> 3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38퍼센트)	<u> 3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38퍼센트)
<u> 3억원 초과</u>	9,460만원 + (3억원을	<u>3억원 초과</u>	9,408만원 + (3억원을
<u>5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)	<u>5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)
<u>5억원 초과</u>	1억7,460만원 + (5억원을	<u>5억원 초과</u>	1억7,408만원 + (5억원을
<u>10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)	<u>10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)
<u>10억원 초과</u>	3억8,460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)	10억원 초과	3억8,408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)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